

사 전 예 고 기 간 단 축 사 유 서

행정규칙명	은행업감독규정	소관부처	금융위원회
분류	1. (○) 긴급을 요하는 경우 2. (○)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3. ()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4. ()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. () 기타		

□ 구체적 사유

- 본 개정안은 「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」(‘23.9.13.)의 후속조치로,
 - 금융이용자들의 미래 금리변동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동/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체계적 제도를 마련*하기 위한 내용
- * 금리변동형 대출상품에 대한 DSR 산정 시 스트레스금리를 적용
- 동 제도는 금융권 협의 및 보도자료 배포*를 통해 충분히 관계기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,
 - * 금융권(은행, 제2금융권) 협의 실시(‘23.12월중), 보도자료 배포(‘23.9.13., ‘23.12.27.)
- 금년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신속한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

□ 향후 일정(안)

- ‘24.1.18일 ~ 1.25일 규정변경예고 실시
- ~‘24.1월말 규제비용 검증·자체 규제심사
- ‘24.1~2월 중 법제처·규제개혁위원회 심사
- ‘24.2.21일 금융위원회 상정 및 의결

□ 규정변경예고 기간 : ‘24.1.18일~1.25일 (7일간)

2024. 1. 18.

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
거시금융팀장 김 태 훈